

4월2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0801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77	7,957	1,555.56	1,555.56	19.5496	19.5496	운동시설	1/	자연녹지지역	20.04.09	보류	현장확인 후 심의 진행합니다.
2	20206500000P001000	증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629	29,850	6,180	6,821.54	20.7035	21.9293	문화및집회시설	1/1	자연녹지지역	20.04.09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3	20206500000P001024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914	5,866	1,203.55	4,079.64	20.5174	66.1684	공동주택	4/1	제1종일반주거지역	20.04.09	조건부동의	공동주택 촉벽기준 검토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4	20206500000P000949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17	2,070	305.12	299.52	14.7401	14.4696	제1종근린생활시설	1/	자연녹지지역	20.04.09	반려	심의대상(지역) 검토 바랍니다.
5	20206500000P000948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79	377	73.2	73.2	19.4164	19.41	창고시설	1/	계획관리지역	20.04.09	부결	오름 내 부지로써 건축행위 시 오름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	20206500000P000822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옥리 219	579	82.8	82.8	14.3005	14.3005	제1종근린생활시설	/	보전관리지역	20.04.09	부결	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